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월 10일,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1일
다. 상정일자 : 제2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월 23일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장재원

가.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및 「지방차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고시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의 정비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**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, 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**

(안 제21조제2항, 제31조의2, 제34조, 제34조의2, 제88조, 제88조의2)

▶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

-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"신규취급액기준 COFIX"로 함.

○ **일자리 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** (안 제28조제4항)

▶ 대부료 50퍼센트 감액
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 인

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○ “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

▶ 운영기준 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-30호)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함(안 제36조제1호·제4호·제8호·제9호·제10호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사용료, 대부료, 매각대금, 교환차금, 변상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였으나, 그 기준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

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, 즉 일자리 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50퍼센트 감액하도록 한 것은 향후 우리 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.

또한, 행정자치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비 · 추가 신설하고,

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